

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

올덴부르크고등법원

1987.5. 18 선고- I3U 89/86 사건

적용법조

독일민법 제 823 조, 제 847 조

판결요지

1. 피해자가 워낙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태여 피해자의 성명을 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의 고객, 경쟁업자, 전문기관들이 수사절차 및 압류처분 등에 관한 문의 보도가 바로 그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 해서, 문제로 된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.
2. 어떤 신문이 배포되는 구역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그 피해자에 관련된 기사에 관하여 일반공중이 가지는 이익의 범위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, 그 피해자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 및 수색활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(더욱이 위 수사의 결과,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)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침해로 인해 위자료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.

사실개요

1. 원고의 지배인인 2 원고는, 피고에 대하여, 피고가 신문기사에 있어서 위 원고의 생각으로는 진실에 반하고 또한 그를 모욕하는 보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. 위 원고들에 대하여 행해진 세금포탈을 이유로 한 수사절차에 있어서, 1985. 10. 15 M 및 H에 있는 1 원고의 사무실이 수색당하였는 그 결과 관계 서류들이 압류당하였다.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1 피고는 그가 발행하는 「M 일간지」 및 「I 신문」의 1985 10, 19 자 신문에서 2 피고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하였는 바, 이는 『주택건축: 세금조사반원이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압수해 가다』라는 제하로,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. 「그런데 M 경사의 이야기에 의하면, 위와 같은 수색과는 별도로, 검찰은 이미 이전부터, 몇 가지의 사건에 있어서, 위 회사의 지배인인 H 건설업자(상세한 지역표시가 있음), Gerhard G(완전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)에 대하여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. 그런데 위 Gerhard G는 과거에 시의회 의원이기도 하였다. 그리하여 수개의 절차가 계속중에 있었는데, 현재는 <세금관계의 문제> 때문에 위 절차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다. 그리고 위 절차 중의 하나의 절차에서는 위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로 인한 수사가 행해지고 있었다. 위 건설업자는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인을 겸하고 있었는데, 그는 위 회사를 어떤 네덜란드인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다. 그 건설업자는 위 네덜란드인으로부터 약간의 약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. 그리하여 이

경우에 어음사기가 문제로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였지만, 아직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.」고 보도하였다.

2. 원고의 요청에 따라서 1 피고는 1985. 10. 26 위 「일간지」 및 「1신문」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주었다. 한편 위 2 원고는 근무감독 이의절차에서, 위 기사에서 언급된 「네덜란드인과 동업하는 위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기로 인한 수사절차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. 즉 위 수사는 그에 대하여서가 아니라, 그의 아들인 Josef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라는 것이다. 그리고 위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어음이 문제로 되어 있는 위 수사절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. 1985. 10. 30 자의 고등검찰청 검사의 답변서에 있어서도 그곳에서 인용된 M검사의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, 위 기사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게서 연유한 것이 아닌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.

(1) 검찰청의 대리인들은 위 수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.

(2) 나는 Gerhard G 씨를 세금탈세절차에 있어서나, 또는, 사실상 위 세금탈세사건의 원인이 된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.

(3) 여러 가지의 절차가 계속중에 있고, 또한, 그 절차들이 세금사건 때문에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. 이러한 의사표시를 나는 전혀 한 적이 없다.

(4) Gerhard G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아니었고, 이러한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이야기한 적도 없다. 따라서 원고들은 위 신문기사에 게재되어 있는 주장들 즉 2 원고는 다른 사건들에서 사기 및 어음사기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바 있고, 그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며, 위 회사는 네덜란드인과 공동으로 경영되고 있고, 위 네덜란드인은 다소간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주장들을 거짓이라고 전했다. 원고들은,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들이 공표됨에 의하여 그들의 명성 및 재산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. 2 원고는 그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믿는 것이라고는 고객들의 그에 대한 각별한 신뢰밖에는 없었는데, - 1 원고가 관리하는 공적인 금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- 위 신문기사에 의하여 종래의 위 신뢰관계가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것이다. 그리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. 즉 피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발생한, 그리고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, 또한 피고들은 2 원고에게 위 허위의 주장의 보도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위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함에 있어서(위 금전의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),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. 피고들은 위 서류들의 수색 및 압수는 이미 그 지방의 화제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. M 경사는 2 피고의 전화질문에 대하여 위 기사에 씌어져 있는 바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. 그리고 2 원고는 전화상의 요청에 대하여 - 위 기사에 포함된 서로 상치되는 기술에 관하여서도 역시 - 그의 이름을 그대로 게재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리고 위 원고에 대하여는 위 세금사건 이외에도 나머지의 조사들 특히 사기사건의 조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. 위 지방법원의 제 10 민사부의 단독판사는 증거조사를 거친 후에 그 소를 기각하였다. 그리고 위자료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. 그러나 2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과실 있는 중대한 침해에 대하여는 1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2 피고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. 그러나 기타의

계속중에 있는 수사절차에 관한 부적절한 보도는, 후에 신용사기로 인한 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불충분하나마 어느 정도의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. 위 신문기사에 게재된 부적절한 기술에 대하여는, 2 원고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함으로써, 즉 상반되는 경사의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의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.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이유를 밝혔다. 그리고 원고들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였다가, 나중에 정정한 확인청구를, 기일지정 이후, 구두변론 이전에 취하하였다. 2 원고는 그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위 판결을 다투면서, 1987. 12. 당원이 그의 항소를 각하한 결석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한 다음, 첫째로 위 결석판결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고, 둘째로, 2 원고에 대하여 1985. 10. 19 자 「일간지」 및 「E 신문」의 기사에 게재된 다음과 같은 주장에 의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위 원고에게 위자료로 최소한 5만 마르크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위 1 심 판결을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.

(a) 경찰의 대리인들이 위 수색에 참여하였다는 주장

(b) M 경사가, 2 원고가 세금사건 및 사기사건의 피의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주장.

(c) 2 원고에 대하여 몇 가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, 이는 세금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있다고 M 경사가 이야기하였다는 주장.

(d) 2 원고는 다른 회사를 어떤 네덜란드인과 공동경영하고 있었는데, 위 원고는 그를 다소간 조직적으로 착취하고 있었으며, 이에 관하여 어음사기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고 M 경사가 이야기하였다는 주장. 위 이의 및 2 원고의 위 항소는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판결이유

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인격권, 즉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기타의 권리(BGHZ 24, 72, 76, 27, 284, 285 참조)의 침해로 인하여 정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.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(BGH NJW1971, 698, 699, Palandt – Thomas, BGB, 46AufL. §823 anm. 15F 참조), 그리고 위법하며, 또한 과실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. 2 원고가 그의 직업상의 활동을 침해하고, 그러하여 그의 개인적인 영역 (Palandt–Thomas, a .a. O. §823 Anm. 15Ba 참조)을 침해 당한 것으로 느낀, 1 원고의 사무실에서의 수색에 관한 신문보도는 위법한 것은 아니다. 왜냐하면 피고들은 위 보도를 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일반 공중의 정보획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기 때문이다(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). 그리고 위 기사에서 2 원고의 이름이 수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있다고 하더라도, 1 원고는 이미 북부독일에 있어서는 잘 알려져 있고, 또한 전체의 북서독일지방에 있어서 1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그의 중요성으로 인하여, 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며,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은 위 기사로 인하여 그의 가족, 친구, 친지에 대한 그의 사적인 영역이 침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. 왜냐하면, 이와 같이 지명도가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2 원고의 친구나 친지들뿐만이 아니라, 그의 고객, 경쟁자 및 그가 언급한 전문기관들까지도 모두 1 원고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

기사를 읽게 되면, 어차피 이는 2 원고의 성명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 문제로 되고 있는 다른 하나의 점, 즉 이미 검찰에서 몇 가지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부분은, 그 자체로 판단하면, 어떤 형사범죄행위가 이미 증명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, 오히려,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의한다면, 경찰이 어떤 특정범죄행위를 인지하고,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. 따라서 위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정보원에 관한 것이 아닌 한,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서는 2 원고에 불이익이 될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. 그리고 검찰의 대리인이 위 수색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의 문제는 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그러나 위 신문기사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기재들 즉, 2 원고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서 사기죄로, 특히 어음사기를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, 위 원고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었고, 위 회사는 네덜란드인과 공동으로 경영되고 있었는데, 동인은 다소간 조직적으로 약탈당하고 있었다라는 기재들은 위 2 원고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.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위자료의 지급에 의한 보상 이외의 방법으로서만 그 피해가 전보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. 검찰이 2 원고에 대하여 세금포탈을 이유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사실이다. 위 수색에서 발견

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1985. 10. 31 이래 검찰이 위 원고에 대하여, 신용사기를 이유로 수사를 해왔고, 이는 1986. 5. 6.1 심 재판의 도중 「0」 지방법원에 검찰이 제출한 자료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이다. 이러한 절차는 현재 계속되고 있지도 않고, 과거에도 계속된 바가 없다고 하는 1987. 1 9일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을 2 원고는 1987. 4. 2 당원의 구두 변론기일에서는 이미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다. 「위 방대한 행위로부터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는지」의 여부 및 압수된 모든 자료들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는 2 원고가 상세히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. 이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, 위 원고가 본건기사의 공표 당시 피고들에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, 광범위한 수색에 이어서 바로 경찰이 개시한 수사내용들을 2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기사내용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작용을 하여 그 결과(다른 보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) 금전의 지급에 의한 배상이 급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정인 것이다. 나머지의 수사절차들은 배임, 문서위조 및 사기의 혐의로 원고의 아들인, 건설업자 Josef G.에 대한 것이었다. 따라서 위 신문기사가 위 2 원고에 대하여 계속중이던 몇 가지의 수사절차를 공표할 당시에, 위 2 원고가 (그에 의하여 착취당하고 있던) 어떤 네덜란드 사람과 함께 다른 회사의 공동 지배인이었다 라는 기술부분은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된다. 이에 반하여 2 원고는, 위 기사의 보도 당시 검찰이 그에 대하여 세금포탈을 이유로 수사하고 있었고, 그리고 요즈음은 그에 대하여 신용사기로 인한 수사절차가 계속중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. 이러한 설명은, 세금포탈의 혐의 및 비교적 단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지된 사기혐의에 관한 중대한 비난에 관한,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인 위 보도에 비하여 단지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으로써,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까지는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. 2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, 그에 대하여 계속 중이던 몇 개의 수사절차에 대한 보도가 너무 광범위하고 따라서 각별히

그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여도 이로써는 위자료의 청구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.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에 반하는 기재로 인하여 2 원고에게 발생한 기타의 불이익은 그의 청구에 의하여 정정 보도문이 보도됨으로써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. 그 밖에도 2 원고는, 1985.10. 30 검사가 그에게 제공해준 정보를 기초로하여, 피고들로부터 취소를 받아내려는 것도 중단하였다. 나아가 2 원고가 진실에 반하는 기사라고 지적한 점들 즉 그가 다른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이 회사를 그가 착취한 네덜란드 사람과 함께 경영하고 있었다는 기사에 의하여서도, 그는 역시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. 왜냐하면, 이와 같은 진실에 반하는 기사에 대하여는, 그는 정정보도문으로서 용이하게 이를 반박할 수가 있었을 것이며,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도 그는 정정보도문으로서 위 게재된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. 분명히 성명의 혼동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. 그는 그 자신이 아니라, 그의 아들인 건설업자 Josef G.가 위 회사의 지배인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. 그가 이러한 R 회사에 관련된 비난의 배경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그의 1985. 10, 21 일자 직무감독에 대한 이의사건 과정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이다. 그리고 이러한 해명을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었다. 또한 그 범위에 있어서도 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하등의 취소도 받아내지 아니하였다. 그리고 원고가 1985. 10. 30 일자 검찰이 그에게 보낸 자료를 기초로 하여, 진실에 반하는 사실상의 주장, 즉 네덜란드인에게 피해를 준 사기의 혐의에 관련된 주장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, 그대신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의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, 이는 위 원고에 대한 단계에 있어서는, 그에게 가하여진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불이익의 제거 즉 보상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, 단지 금전의 지급만이 문제로 되는 것임은 분명하다.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,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권이 예상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.(Wenzel, Das Recht der Wort- und Bildberichterstattung, 3. Aufl. Rd.-Nr. 14. 104. ff, 특히 Rd -Nr. 14.105 und 14.107 참조) .따라서 본건 사건의 사정하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보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. 이 경우에 있어서,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 원고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타의 수사절차가 계속중에 있는지 또는 계속중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. 그러나, 이미 말한 바와 같이 1985 년, 1986 년도부터의 이미 통지된 절차중의 3 가지는 1986. 5. 6 자 경찰의 이 사건 안내문에도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유념하여야 한다.